

2002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·세출결산승인(안)

의안 번호	46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3. 05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2002회계년도 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세입·세출결산을 지방자치법 제125조(결산)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(결산), 동법시행령 제36조(결산서의 제출등)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2002회계년도 세입·세출결산 총괄

(단위 : 천원)

회계별	예산액 (A)	세입결산액 (B)	세출결산액		잉여금		
			B/A (%)	(C)	C/A (%)	(D)	D/A (%)
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	6,312,628	6,585,892	104.33	5,577,829	88.36	1,008,063	15.97

가. 세입결산

(단위 : 천원)

회계별	예산액 (A)	징수결정액 (B)	수납액		미수납액		
			B/A (%)	(C)	C/A (%)	(D)	D/A (%)
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	6,312,628	7,310,485	115.81	6,585,892	104.33	724,593	11.48

나. 세출결산

(단위 : 천원)

회계별	예산액 (A)	예산현액 (B)	지출액 (C)		이월액 (D)		불용액 (E)	
				C/B (%)		D/B (%)		E/B (%)
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	6,312,628	6,976,930	5,577,829	79.95	1,068,820	15.32	330,281	4.73

다. 잉여금 처리상황

(단위 : 천원)

구분 회계별	계	명시이월	사고이월	계속비	보조금 집행잔액	순세계잉여금
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	1,008,063	50,000 (150,000)	89,720	358,617 (420,483)	-	509,726

※ ()자금없는 이월액 : 이월액에는 포함안됨.

□ 결산감사 결과요약

가. 급수원가 및 수익분석

- 총괄원가 : 4,459,951 천원 (톤당 소요액 ⇒ 2,261원)
- 급수수익 : 1,480,507 천원 (현재 톤당 ⇒ 750원 공급)
- 결손액 : 2,979,444 천원 (총괄원가 - 급수수익)
- 인상요인 : 201.24 % (결손액 ÷ 급수수익)

나. 총괄원가 현황 ----- 4,459,951천원

⇒ (영업비용 + 자본비용) - (기타영업수익 + 영업외수익)

- 영업비용 ----- 2,813,512천원
 - 인건비 ----- 1,541,314천원
 - 동력비 ----- 175,688천원
 - 약품비 ----- 7,664천원
 - 수선유지비 ----- 107,456천원
 - 감가상각비 ----- 798,874천원
 - 기타 경비 ----- 182,516천원

○ 자본비용 -----	1,719,018천원
- 타인자본비용 -----	636,009천원
- 자기자본비용 -----	1,083,009천원
○ 기타 영업수익 -----	39,194천원
○ 영업외 수익 -----	33,385천원
다. 급수수익 현황 -----	1,480,507천원
○ 가정용 -----	684,107천원
○ 업무용 -----	313,163천원
○ 영업용 -----	450,916천원
○ 욕탕용 -----	32,321천원

□ 향후 추진계획

- 특별회계 1차년도 감사결과 2002년 1. 1일자로 '98년 사용료대비 30%를 인상하였으나 현재 부과 조정량으로 총괄원가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201.24%의 상수도요금 인상이 요구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
 - ⇒ 2003년 9월 상수도 요금부터 40%인상 적극 검토
 - ※ 반상회보('03. 4. 25)에 인상요인 게재
 - ⇒ 급진적 인상이 아닌 점진적 인상 방향으로 민원발생 최소화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“관계법령 발췌서 붙임”

- 지방자치법 제125조(결산)
- 지방공기업법 제35조(결산)
-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36조(결산서의 제출등)

나. 기타사항

- 2002회계년도 평창군상수도사업보고서 붙임
- 2002회계년도 평창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붙임

관 계 법 령 발 취 서

지 방 자 치 법

第125條(決算)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出納閉鎖후 80日이내에 決算書 및 證憑書類를 작성하고 地方議會가 選任한 檢査委員의 決算意見書를 첨부하여 다음 年度 地方議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.

지 방 공 기 업 법

第35條(決算) ①管理者는 每 事業年度末日 現在로서 모든 帳簿를 마감하여 決算을 하여야 한다.

②管理者는 每 事業年度 終了후 2월 이내에 당해 地方直營企業의 決算을 作成하고 이를 당해年度の 事業報告書 및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書類와 함께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決算 및 事業報告書와 기타 書類에 公認會計士의 會計監査報告書를 첨부하여 다음 年度 地方議會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지 방 공 기 업 법 시 행 령

제36조(결산서의 제출 등) ①법 제35조제2항에서 “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”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.

1. 대차대조표
2. 손익계산서
3.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
4. 자금운용계산서 또는 현금흐름표
5. 회전기금을 둔 경우에는 그 운용상황서
6. 결산부속명세서